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

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¹⁾(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함)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²⁾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임(참고자료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³⁾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장애인 등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이러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이를 실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①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② 수급자의 규모,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③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④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함.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동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효율적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실시 및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⁴⁾에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하므로, 조사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서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참고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지급 받은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 청구·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일정액의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는 활

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지원급여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을 뿐, 활동지원기관의 준수 여부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권장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운영비의 경우에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① 재무·회계 기준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하거나, ②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활동지원기관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참고로, 재무·회계기준은 현행법 제22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관련 입법례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음.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